

[별표 7] <개정 2007.12.28>

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(제89조제3항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과태료의 금 액
1.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	법 제99조제2호	150만원
2.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, 제12호 및 제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	법 제99조제2호	50만원
3.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	법 제99조제3호	100만원
3의2.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	법 제99조제3호 의2	100만원
3의3.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99조제4호	150만원
4.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99조제5호	150만원
4의2.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(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,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목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)	법 제99조제6호	150만원
4의3.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(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한다)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99조제7호	300만원
5.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	법 제99조제8호	150만원
5의2.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	법 제100조제1호	50만원
6.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	법 제100조제2호	30만원
6의2.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100조제2호 의2	50만원
7.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	법 제100조제3호	30만원